

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특약

특약 약관

[신상품]



BNP PARIBAS CARDIF
BNP파리바 카디프생명

변화하는
세상을 위한
보험사

목 차

제 1 조 【목적】.....	3
제 2 조 【특약의 적용범위】	3
제 3 조 【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】.....	3
제 4 조 【보험료 할인의 적용】.....	5
제 5 조 【보험료 할인의 적용 기간】.....	5
제 6 조 【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】.....	6

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특약 약관

※ 약관조항에 대한 '해설' 또는 '사례'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 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제1조 【목적】

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(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)의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【특약의 적용범위】

이 특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 중 유효한 계약(이하 '해당계약'이라 합 니다)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1. 회사가 업무보고서 상 어린이보험으로 분류한 상품
2. '어린이', '자녀', '아이', '베이비' 등 상품명에 어린이와 관련한 단어를 포 함한 보장성 상품

제3조 【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】

① 계약자(미성년자인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, 이하 같습니다.)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할인 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.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(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, 이하 같습니다.)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(단, 해당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)
2.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 기간 중인 경우

② 제 1 항 제 1 호의 '출산' 은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, 출산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③ 제 1 항 제 2 호의 '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'은 「남녀고용평등 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르며,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

내에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【해설: 육아휴직】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9 조(육아휴직), 국가공무원법 제 71 조(휴직)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
【해설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】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9 조의 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, 국가공무원법 제 26 조의 2(근무시간의 단축임용 등)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만 12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.

④ 제 3 항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의 적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.

⑤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계약 당 1 회에 한하여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【사례: 보험료 할인 대상】

- 첫째 자녀의 해당계약을 가입한 후,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
→ 해당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**할인 신청 불가**
- 첫째 및 둘째 자녀의 해당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,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
→ 첫째자녀 계약은 해당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미해당하여
할인 신청 가능
→ 둘째자녀 계약은 해당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
할인 신청 불가
- 첫째 및 둘째 자녀의 해당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, 계약자(또는 그의 배우자)가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 중인 경우
→ 첫째 및 둘째 자녀 계약 모두 **할인 신청 가능**

※ 단, 해당계약 당 납입기간 중 1 회에 한하여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⑥ 계약자는 회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1. 각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가. 출산: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

나.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: 육아휴직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)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
2.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⑦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1. 해당계약의 주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(연만기 갱신형 상품의 경우, 주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포함)

2. 이미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

3. 제 1 항의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 년 이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(단, 변경 전 계약자가 변경 후 계약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)

제4조 【보험료 할인의 적용】

① 계약자가 제 3 조(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)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, 해당계약에 대하여 제 2 항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여 드립니다. 할인 금액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릅니다.

② 제 3 조(보험료 할인의 적용대상 및 신청) 제 6 항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접수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.

제5조 【보험료 할인의 적용 기간】

제 4 조(보험료 할인의 적용)에 의해 해당계약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시점부터 1 년(12 개월)간 적용합니다.

제6조 【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】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따릅니다.